

의안 번호	1051	【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14. 03. 05.(수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03. 10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4. 03. 13.(목)

## 2. 개정이유

- 가. 중구 문화의전당 건립,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
- 나.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업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기구 신설(사업소) : 문화의전당
- 나. 분장사무 조정
  - 1) 행정지원국장
    - 가) 총무과 사무에 “정보관리” 추가, “통신” 삭제
    - 나) 자치행정과 사무에 “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, 통신” 추가, “녹색정책, 자전거, 정보관리” 삭제
    - 다) 평생교육과 사무에 “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, 청소년” 삭제
  - 2) 복지경제국장
    - 가) 사회복지과 사무에 “청소년” 추가
    - 나) 환경위생과 사무에 “녹색성장” 추가
  - 3) 건설도시국장 : 안전건설과 사무에 “자전거” 추가

#### 4. 관련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#### 5. 검토의견

- 중구 문화의전당 건립,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업무부서 일원화 등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
  
- 주요내용을 보면
  - 기구 신설(사업소)로는 문화의전당이 신설되며
  - 분장사무 조정으로는
    -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 중
      - ▶ 총무과 사무에 “정보관리” 추가, “통신” 삭제
      - ▶ 자치행정과 사무에 “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, 통신” 추가, “녹색정책, 자전거, 정보관리” 삭제
      - ▶ 평생교육과 사무에 “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, 청소년” 삭제
    - 복지경제국장 분장사무 중
      - ▶ 사회복지과 사무에 “청소년” 추가
      - ▶ 환경위생과 사무에 “녹색성장” 추가
    - 건설도시국장 분장 사무중
      - ▶ 안전건설과 사무에 “자전거” 추가가 있습니다.
  
- 중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구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※ 관련법규

### [지방자치법]

-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## [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]

-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29>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